

NSW 화재경보기 관련 법령

Fact Sheet 11A – Community Risk Management. Revised 25/11/2005 - Korean

- NSW FIRE BRIGADES
- NSW RURAL FIRE SERVICE
- ACT FIRE BRIGADE
- ACT RURAL FIRE SERVICE

현황

2006년 5월 1일자로, 모든 NSW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주택에 최소 1개 이상의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에는 임대주택, 자택 그리고 임시 거주지 모두가 포함됩니다.

화재경보기 설치에 대한 NSW 소방청의 의견

- NSW전역의 모든 주택에는 **AS3786** 또는 **AS12239**의 규격에 맞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화재경보기는 제작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호주 빌딩코드 및 제작회사의 설치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9볼트 전원을 사용하는 화재경보기는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교체되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선전원을 사용하는 화재경보기 설치를 권장합니다
- 독립주택(1급 빌딩)의 화재경보기는 모든 침실 밖에 위치하여야 하며 침실과 외부로 연결되는 출구사이의 모든 통로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세대주택과 같이 2가구 또는 그 이상의 가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서의 화재경보기는 모든 침실 밖에 위치하여야 하며 침실과 통상의 통로로 연결되는 출구사이의 모든 통로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층세대의 화재경보기는 상기 조항에 더하여, 각 층간으로 연결되는 모든 통로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화재경보기가 공기조건, 난방기구, 선풍기 및 다른 온도 조절장치 등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 건물주는 광전자형 및 이온화형 화재경보기를 함께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설치의 책임은 건물주에 있으며, 임대주택일 경우 주택 소유자에 있습니다
- 240볼트 전원을 사용하는 화재경보기는 자격을 갖춘 전기 기능공이 설치하여야 하며 9볼트 전원을 사용하는 화재경보기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주거지일 경우, 화재경보기는 모든 침실 안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240볼트 전원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임시 주거지(예를 들어 텐트, 보트, 카라반)에서는 배터리로 사용하는 화재경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주거지일 경우, 화재경보기는 모든 침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 또는 에이전트가 화재경보기 설치를 위하여 주택에 들어갈 때에는 세입자에게 최소 2일 이상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는 화재경보기를 제공하며 소요되는 배터리와 이의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세입자는 화재경보기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는 성능테스트와 청소의 책임이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의 소재지 소방서 또는 화재 진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www.fire.nsw.gov.au www.rfs.nsw.gov.au를 방문하십시오.

화재시는 000번으로 연락하십시오